

대전지방법원 2022. 7. 19 선고 2020가단12599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법조

담당변호사 전정수, 김동섭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권

변 론 종 결 2022. 6. 21.

판 결 선 고 2022. 7. 19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소외 C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사이에 별지 목록 1,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. 6. 7. 체결된 매매계약을 별지 목록 3항 기재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3항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가. 원고가 원고의 대리점주 소외 C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5차1095호로 약정에 따른 장비대금 및 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, 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5. 4. 16. 확정되었다.

나. C는 2017. 6. 7. 별지 목록 제1, 2항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을 동생인 피고에게 매도하고(이하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 한다), 2017. 6. 28.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C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매각하여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하였다.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별지 목록 3항 기재 채권액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한다.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후 기존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,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3항 기재 채권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1)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한다.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고, 이러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1. 4. 27. 선고 2000다69026 판결 등 참조). 또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

사실은 물론,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,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4. 10. 27.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).

2)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오히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,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① 세종시 D 답 1,072㎡(2017. 9. 21.경 거래가액 143,000,000원), ② 청주시 서원구 E아파트 F호(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시가 170,000,000원), ③ 세종시 G 전 1,101㎡(2018. 9. 19. 기준 감정가격 76,519,500원) 중 1/2 지분, ④ 청주시 흥덕구 H건물 I호(2013. 6. 24. 거래가액 93,400,000원) 등의 부동산과 13,188,240원의 예금 채권을 소유 내지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,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약 2,000만 원 가량 되는 원고의 C에 대한 별지 목록 3항 기재 채무 외에는 다른 소극재산에 대한 구체적 주장, 입증이 없다. 따라서 C가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,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황성욱

< 별 지 >

1. 세종특별자치시 대 664㎡

2. 세종특별자치시

[도로명주소] 세종특별자치시

조적조 및 변색벽돌조 스톤지붕 단층 주택

85.86㎡

조적조 및 세멘트벽조 스톤지붕 단층 주택 및 축사

42.3㎡

흙벽돌구조 스톤지붕 단층 축사

20.67㎡

부속건물

목조 스톤지붕 단층 화장실

2.99㎡

3. 금 13,394,380원 및 이중 금 11,424,000원에 대한 2014.10.1.부터 2015.4.1.까지 연 19%의, 2015.4.2.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연 20%의, 나머지 1,970,380원에 대한 2014.2.28.부터 2015.4.1.까지 연 5%의, 2015.4.2.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.

